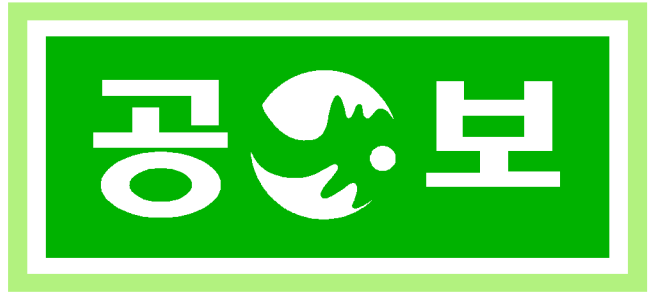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84 호 2015. 12. 10.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60호[도로명주소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6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049호[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 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26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50(진장동)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구번	읍면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처사유	도로명 구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양동 284-1	울산광역시 북구 진양유동로 50(영남동)	2015-12-10	진양유동터지의유동터지로서기동과의미틀비외적으로필리알리고저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1-03	
2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325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6-6	2015-12-10	이지역의행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관려지번정정 523,325 →325	
3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323-3, 323-8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5(신명동)	2015-12-10	기존지역마을인신명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진동 1266-6	울산광역시 북구 중신산업2길 35(중신동)	2015-12-10	중신산업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5	울산광역시 북구 오계동 252-18	울산광역시 북구 동터20길 25(오계동)	2015-12-10	기존마을길에주소상행사이므로도로명사용으로부적합하고동내로에문기하므로일괄번호부여의미하여도로 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6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02-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도림길 10(달천동)	2015-12-10	복이 길이고 낙낙한 길이라는 뜻	2011-08-16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진동 1263-2	울산광역시 북구 중신산업3길 36(중신동)	2015-12-10	중신산업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8	울산광역시 북구 영복동 525-3	울산광역시 북구 종리4길 21(영복동)	2015-12-10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재도시중정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9	울산광역시 북구 시래동 38	울산광역시 북구 장화4길 2(시래동)	2015-12-10	기존지역마을인장화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0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46, 147-2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99	2015-12-10	이지역의행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11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818, 11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275(산하동)	2015-12-10	산하지구중앙을지나는도로라는의미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4-05-07	
1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70-4	울산광역시 북구 신진로 95(매곡동)	2015-12-10	기존지역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4-08	
13	울산광역시 북구 전곡동 984-3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87-32(전곡동)	2015-12-10	관문성으로거는길이리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4	울산광역시 북구 영복동 461-3	울산광역시 북구 종리5길 5-1(영복동)	2015-12-10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재도시중정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15	울산광역시 북구 중진동 1286-4	울산광역시 북구 중신2길 6(중신동)	2015-12-10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3-12-30	
16	울산광역시 북구 중진동 1286-5	울산광역시 북구 중신2길 8(중신동)	2015-12-10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3-12-30	
17	울산광역시 북구 중진동 1286-13	울산광역시 북구 중신서로 4(중신동)	2015-12-10	중신지구서쪽에위치한도로라는의미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3-12-30	
18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82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20(당사동)	2015-12-10	용바위가있는길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9	울산광역시 북구 중진동 900-4	울산광역시 북구 인수3길 47(중신동)	2015-12-10	기존지역마을인인수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관려지번정정 900,2,4 →900-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26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4길 21(엄포동)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식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0.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4길 21(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25-3	2015-12-10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799(신명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46	2015-12-10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87-32(천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84-3	2015-12-10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창좌길 35(시례동)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38	2015-12-10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5길 5-1(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461-3	2015-12-10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10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0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 (‘15. 11. 14.)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협회 등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 규정(안 제4조~제6조)
 -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통안전지도·봉사 등
 - 그 밖에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교통안전법」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 전화 241-7961, 팩스241-796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 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구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차량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 등
6.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